

채무인수승인 통지서

채권자	나라	
채무자 (경락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 -
	주소	전화번호

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
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붙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
낙찰 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그 매입대금(매입대금)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
원은 「민사집행법」 제143조제1항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0조
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매입금액의 지급을 같음하여 경락인이 해당 채무를
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채권자 나라

위 대표자 국가보훈부장관

직인